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사할린동포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외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범위에 생활안정을 추가시키며, 법률에 신설된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신청서 접수기간 단축, 지원 여부 결정 기준 신설, 선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신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신설, 개인정보 처리자 범위 확대 및 처리 가능 개인정보 추가, 입국신고 의무 신설, 지원 취소·철회 근거 신설, 주거지원 승계 근거 신설 등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그리고, 업무 위탁, 선정결과 통지, 사할린동포 사망 신고 등 훈령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대상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 신설)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실태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거 현황,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취업 현황, 의료지원 생활 보호 현황 등을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협조사항 및 전문 연구기관·단체 의뢰에 관하여 정함.

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기간 단축(안 제4조 개정)

- 1)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자의 입국 및 정착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 신청서 접수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2)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의 접수 기한을 기존의 6월 30일에서 4월 30일로 조정함.

다. 지원 여부의 결정(안 제5조 개정)

- 1) 지원 여부 결정 과정에 관계기관 간 협조 요청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조 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관계기관 협조 요청사항으로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규정하고, 관계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협조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라.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신설(안 제6조 신설)

- 1)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정함.

마. 지원 여부 결정 결과의 통지 신설(안 제7조 신설)

-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지원 대상 결정 결과의 통지를 재외동포청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통지 기한을 90일로 설정하며, 통지 절차는 외교부령으로 위임함.

바. 지원 대상자의 입국신고 의무 신설(안 제8조 신설)

- 1)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체계적 입국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입국신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 입국 시 재외동포청장에게 입국신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선정 연도 다음 연도 2월까지 입국이 어려울 경우 입국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함.

사. 지원의 취소 및 철회 신설(안 제9조 신설)

- 1)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상황 변화로 인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지원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지원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취소 사유와 지원 취소 시 예비자 명부에서 대상자를 추가 선정함을 정함.

아.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보완(안 제10조 신설)

- 1)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주거지원 승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에게 주어지는 현행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나열하고, 사할린동포 사망 시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 배우자에게 주거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을 규정함.

자. 사할린동포의 사망 시 신고의무 부과(안 제11조 신설)

- 1) 사할린동포의 사망 시 오류 없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체계적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함.
- 2) 지원 신청 후 또는 지원 대상자 결정 후 사할린동포 사망 시 그 동반가족에게 사망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

차.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신설)

- 1)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함.
- 2)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타. 업무 위탁 규정 정비(안 제13조 개정)

- 1) 시행령과 훈령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 위탁 규정을 시행령에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대한적십자사에 신청 접수, 결과 통지, 입국신고 접수, 사망진단서 접수, 방문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보완(안 제14조 개정)

- 1)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함.
- 2) 재외동포청장 이외에 선정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장은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이외에 유전 정보, 범죄경력자료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기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23. ~ 6.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강화 있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3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 현황
2.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여부·취업직종·근로조건 등 취업 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예비 대상자 명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과의 통지)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결과의 통지는 지원 신청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 절차는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을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로, “6월 30일”을 “4월 30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배우자,”를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을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을 “제4조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의”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제1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 의뢰나 의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 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입국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 연도 다음 연도 2월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제1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입국이 어려울 경우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연기 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철회) ①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 등 합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지원 여부의 통지일 기준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자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자 명부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지원을 철회하려는 경우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철회 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제4호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4.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할린동포가 사망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그 법률상 배우자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을 승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거 지원 승계를 희망하는 자는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 및 사할린동포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할린동포의 사망) 제4조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동반가족은 신청 후 또는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할린동포가 사망할 경우, 사할린동포의 사망일자가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5조) 중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의 접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2. 제7조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3. 제8조에 따른 입국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4. 제11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접수에 관한 업무
5. 제1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
6. 그 외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중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13조”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으로, “정보,”를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각각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실태조사)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주거 현황</u> <u>2.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u> <u>3. 취업여부·취업직종·근로조건 등 취업 현황</u> <u>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u> <u>5. 그 밖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u>

제3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생 략)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 영주

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 4
월 30일-----

--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

-----.

1. (현행과 같음)
2. -----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는 서류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① 재외 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결정을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지원 여부의 결정) ① ----- 제4조에 따라 영주 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

-----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

②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제1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 의뢰나 의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 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재외동

포청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영주귀국 ·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영주귀국 ·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예비 대상자 명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주귀국 ·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⑥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과의 통지)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

<신 설>

원 대상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결과의 통지는 지원 신청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 절차는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입국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 연도 다음 연도 2월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제1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입국이 어려울 경우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연기

<신 설>

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철회) ①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 등 합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지원 여부의 통지일 기준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자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제6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자 명부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지원을 철회하려

<신 설>

는 경우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철회 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제4호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4.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

<신 설>

애인연금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주 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할린동포가 사망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그 법률상 배우자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을 승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거 지원 승계를 희망하는 자는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 및 사할린동포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할린동포의 사망) 제4조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동반가족은 신청 후 또는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할린동포가 사망할 경우, 사할린동포의 사망일자가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

<u><신 설></u> <u>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의 접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다.</u> <u>제12조(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u>제13조(업무의 위탁) -----</u> <u>----- 다음 각 호의</u> <u>-----</u> <u>-----</u> <u>-----</u> <u>-----</u>. <u>1.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u> <u>2. 제7조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u> <u>3. 제8조에 따른 입국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u> <u>4. 제11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접수에 관한 업무</u> <u>5. 제1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u>
---	--

<신 설>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업무

6. 그 외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
----- 포함한다),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1. -----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
2. -----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연 락 처	(032) 585 - 3288